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25.(목) 배포 즉시 배포 2024. 1. 25.(목)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
- 법률명도 알기 쉽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 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내용을 내실화했다.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통상변화가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경민 (044-203-5760)
		담당자	사무관	이선덕 (044-203-576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 FTA 시행 초기('07년) 도입되어 큰 변화 없이 지속된 **'무역조정지원'**을 (기존) FTA 피해기업 구제 ⇨ (개선) **新통상환경 대응지원**으로 개선

□ 그간 경과

○ 김성원의원, 무역조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3.9.14.)

○ 산중위 전체회의, 정부의견 등 반영한 수정안 의결('23.11.30.) →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의결('24.1.24.) → 본회의, 안건 상정·의결('24.1.25.)

□ 주요 내용

◈ FTA 피해기업에 대한 일회성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

❶ (**용어**) 정부에 의한 인위적 구조조정을 연상시키는 무역 조정 표현을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통상환경 변화대응**으로 개선*

* 법률명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❷ (**지원범위**) **지원협정**을 기존 FTA에서 **'통상조약 등**(FTA+α)'으로 **확대**하고, 피해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토록 **기업지원 요건 완화***

* (기존) FTA 이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만 지원
→ (개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도 지원

❸ (**지원내용**) 일시적 경영안정 효과만 있는 **자금융자**는 **폐지**(5년 후 일몰)하고,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지원*** **도입**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전담기관)에 기술·경영 혁신지원 역할을 추가하고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

□ 향후 일정

○ (**'24. 2월**) 법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24.12월**) 하위법령 정비 및 예산안 반영 등 법 개정 후속조치

○ (**'25. 1. 1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정식지원 착수